

의안번호	2204608
의 퇴 인	황명선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9.
추 계 번호	24C4272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소득하위 80%로 상향 조정하고,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와 선정기준 초과 방지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3.0조원(연평균 4.6조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조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기초연금 대상자 확대,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 제도 및 선정기준 초과 방지 감액 제도 폐지 (안 제3조·제8조 등)	4.0	4.3	4.6	4.9	5.2	23.0	4.6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)	보건복지부장관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80% 수준 이 되도록 함 ※ 현행: 65세 이상의 70%	의무규정
2	제8조(기초연금액의 감액) 등	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던 감액 규정과 선정기준 초과 방지 감액 규정을 삭제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(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)	○	과거 지원 대상자 수 및 지원액 추세를 고려하여 추계
2	제8조(기초연금액의 감액) 등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도 전체 수급률 및 세부 유형별 수급자 비중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기초연금급여 외에 제도운영비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
-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, 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와 선정기준 초과 방지 감액 제도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본 추계서는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유지 시 발생하는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
- (대상자 수) 통계청 「장래인구추계」¹⁾의 65세 이상 인구에 대상자 비율, 수급률, 대상자 유형별(국민연금 수급 여부, 가구 유형, 소득감액 적용 여부 등) 수급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
 - (현행 제도 대상자 수) 대상자 비율은 70%를 적용하고, 수급률 및 대상자 유형별 수급자 수 비율은 2021년~2023년의 평균 비율을 적용
 - 대상자 비율 70%를 적용한 수급 대상자 수는 2025년 736.0만명에서 2029년 876.5만명으로 증가 전망

1) 2023년 12월 공표 통계

- (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수) 대상자 비율은 80%를 적용하고, 수급률 및 대상자 유형별 수급자 수 비율은 2021년~2023년 현행 제도의 평균 비율을 적용
 - 대상자 비율 80%를 적용한 수급 대상자 수는 2025년 841.1만명에서 2029년 1,001.7만명으로 증가 전망

[표 2]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수급 대상자 수

(단위: 만명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
65세 이상 노인	1,051.4	1,112.5	1,159.7	1,212.5	1,252.1
현행 수급 대상자 수(70%)	736.0	778.8	811.8	848.8	876.5
개정안에 따른 수급 대상자 수(80%)	841.1	890.0	927.8	970.0	1,001.7

자료: 통계청의 「장래인구추계」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(연금액) 2023년도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(2024.10. 경제전망 기준)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
 - 기준연금액은 2025년 343,180원, 2029년 371,834원 등으로 추계

[표 3]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추정치

(단위: 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
기준연금액	343,180	350,387	357,395	364,543	371,83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현행 제도 감액비율) 부부 동시수급자에 대한 감액 비율은 20% 적용, 가구 유형(단독·부부1인·부부2인)별 소득역전 방지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비율은 2021년~2023년의 평균 감액 비율 적용
- (개정안에 따른 감액비율) 부부 동시수급자에 대한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비율만 적용
 - 다만, 현행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데이터 구조상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감액과 소득역전에 따른 감액분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, 이들에 대해서는 부부 동시수급자에 대한 감액만 적용

- 추계결과,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소득하위 80%로 상향 조정하고,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와 선정기준 초과 방지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3.0조원(연평균 4.6조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조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현행제도 유지 시 기초연금 총재정소요(A)	26.8	29.0	30.7	32.7	34.4	153.7	30.7
개정안에 따른 기초연금 총재정소요(B)	30.8	33.3	35.3	37.7	39.6	176.7	35.3
추가재정소요(B-A)	4.0	4.3	4.6	4.9	5.2	23.0	4.6

주: 제도운영비를 제외한 기초연금급여(국비·지방비 합산)에 대한 재정소요만 추계

IV. 부대의견

- 현행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데이터 구조상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감액과 소득역전에 따른 감액분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, 이들에 대해서는 부부 동시수급자에 대한 감액만 적용한 결과임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